

# 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\*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Y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</p> <p>제 1 조 &lt;생략&gt;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“은행”이 “가입자”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 <p>2. “하나인증서”(이하 “인증서”라 합니다)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로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가입자”라 함은 <u>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으로부터 인증서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4. “이용자(이용기관)”라 함은 <u>가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를</u></p>	<p>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</p> <p>제 1 조 &lt;좌동&gt;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“은행”이 “가입자”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 <p>2. “하나인증서”(이하 “인증서”라 합니다)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로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가입자”라 함은 <u>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은행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4. <u>“하나은행 앱” 이라 함은 은행이 가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.</u></p> <p>5. “이용자(이용기관)”라 함은 <u>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은행이</u></p>	<p>전자서명법의 용어 정의 준용</p> <p>“하나은행 앱” 정의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<u>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</u></p> <p>5~16&lt;생략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4 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)</b></p> <p>① 가입 신청 고객은 <u>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인증단계를 거친 후 인증서의 인증수단을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, 승낙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(e-mail, 유선통화, LMS/SMS 등)합니다.</p> <p>1. 기술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</p>	<p><u>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6~17 &lt;호올림&gt;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4 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)</b></p> <p>① 가입 신청 고객은 <u>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,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,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 후 신분증 진위확인, 계좌인증,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</u>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, 승낙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(e-mail, 유선통화, LMS/SMS 등)합니다.</p> <p>1.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, 하나인증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신청 등 기술적으로 은행의 하나인증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</p>	<p>전자서명법의 용어 정의 준용</p> <p>이용계약 체결 절차를 명확하게 표현</p> <p>이용계약 체결 제한 사유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2~5. &lt;생략&gt;</p> <p>6. 이 약관 및 <b>하나원큐 앱</b>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 <p><b>제 5 조 (서비스 범위)</b></p> <p>①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<b>폐기</b>, 인증이력 조회,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받습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발급된 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용자(이용기관)의 전자 문서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 또는 확인</li> <li>2. 이용자(이용기관)의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<b>간편인증</b></li> <li>3. 본인확인서비스</li> <li>4. 기타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거래업무 및 인증서 활용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기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6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7 조 (이용방법)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경우</b></p> <p>2~5. &lt;좌동&gt;</p> <p>6. 이 약관 및 <b>하나은행 앱 관련</b>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 <p><b>제 5 조 (서비스 범위)</b></p> <p>①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<b>폐지</b>, 인증이력 조회,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받습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발급된 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용자(이용기관)의 전자 문서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위한 <b>전자서명</b></li> <li>2. 이용자(이용기관)의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<b>전자서명</b></li> <li>3. 본인확인서비스</li> <li>4. 기타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거래업무 및 인증서 활용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기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6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7 조 (이용방법)</b></p>	<p>새로 정의된 용어 사용</p> <p>용어통일</p> <p>서비스범위 용어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<u>은행의 소프트웨어(이하 "하나원큐 앱"이라 합니다)</u>를 설치하고,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, 1인 1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사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이용자(이용기관)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이용자(이용기관)는 <u>하나원큐</u> 앱내 안내 페이지 및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자(이용기관)의 이용방법은 이용자(이용기관)의 절차에 따릅니다.</p> <p>④ 가입자는 <u>하나원큐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확인기관의 본인<u>인증</u>, 신분증 진위확인, 계좌 인증을 통한 가입자 신원확인 및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가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</p> <p>⑤ 가입자는 <u>하나원큐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<u>재발급 시</u>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 재발급 시,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<u>폐기</u>되고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</p> <p>⑥ 가입자는 <u>하나원큐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<u>폐기</u>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입자 인증서 정보의 분실·훼손·도난·유출 등 사유로 <u>하나원큐</u> 앱을 통한 인증서 <u>폐기</u>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 문의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인증서를 <u>폐기</u>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<u>"하나은행 앱"을</u> 설치하고,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, 1인 1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사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이용자(이용기관)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이용자(이용기관)는 <u>하나은행</u> 앱내 안내 페이지 및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자(이용기관)의 이용방법은 이용자(이용기관)의 절차에 따릅니다.</p> <p>④ 가입자는 <u>하나은행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확인기관의 본인<u>확인</u>, 신분증 진위확인, 계좌 인증을 통한 가입자 신원확인 및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가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</p> <p>⑤ 가입자는 <u>하나은행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<u>&lt;삭제&gt;</u>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 재발급 시,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<u>폐지</u>되고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</p> <p>⑥ 가입자는 <u>하나은행</u>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<u>폐지</u>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입자 인증서 정보의 분실·훼손·도난·유출 등 사유로 <u>하나은행</u> 앱을 통한 인증서 <u>폐지</u>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 문의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인증서를 <u>폐지</u>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새로 정의된 용어 사용</p> <p>새로 정의된 용어 사용 및 용어통일</p> <p>새로 정의된 용어 사용 및 용어통일</p> <p>앱삭제 등 인증서 삭제 시 폐지절차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⑦ 은행은 인증서 갱신발급이나 변경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변경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, 가입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.</p> <p>⑧ 기타 인증서 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'인증업무준칙 4.인증서 관리'를 따르며,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은 제 10 조를 따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8 조~제 9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10 조 (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)</b></p> <p>① <u>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가입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, 가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하여, 본인 식별 또는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.</u>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 <p>⑤ 은행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이용자(이용기관)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자(이용기관)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·관리·<u>폐기</u>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1 조 &lt;생략&gt;</b></p>	<p>⑦ 은행은 인증서 갱신발급이나 변경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변경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, 가입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.</p> <p>⑧ 기타 인증서 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'인증업무준칙 4.인증서 관리'를 따르며,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은 제 10 조를 따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8 조~제 9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10 조 (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)</b></p> <p>①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②~③ &lt;항내림&gt;</p> <p>④ 은행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이용자(이용기관)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자(이용기관)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·관리·<u>폐지</u>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1 조 &lt;좌동&gt;</b></p>	<p>2 조 1 항 12 호와 중복으로 삭제</p> <p>용어통일</p>

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6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<u>폐기</u>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</li> <li>2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</li> <li>3. 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li> <li>4. 가입자의 개인정보(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)가 변경된 경우</li> </ol> <p>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되어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<u>폐기</u>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.</p> <p><b>제 13 조 (서비스 해지)</b></p> <p>가입자는 <u>하나원큐</u> 앱 또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</p>	<p>6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<u>폐지</u>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</li> <li>2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</li> <li>3. 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li> <li>4. 가입자의 개인정보(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)가 변경된 경우</li> </ol> <p>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되어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<u>폐지</u>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.</p> <p><b>제 13 조 (서비스 해지)</b></p> <p>가입자는 <u>하나은행</u> 앱 또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</p>	<p>용어통일</p> <p>용어통일</p> <p>새로 정의된 용어 사용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관련법령, 이용약관, 인증업무준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4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15 조 (가입자의 의무)</b></p> 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가입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하였거나 발급된 인증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, 즉시 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 은행이 해당 인증서를 <u>폐기</u>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, <u>하나원큐</u> 앱에서 인증서 <u>폐기</u> 메뉴를 통해 인증서를 <u>폐기</u>해야 합니다.</p> <p>⑤ 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대여, 사용 위임,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의 도용이나 위조·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</p> <p>⑥ 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.</p> <p>⑦ 가입자는 대체수단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,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, 은행은 가입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해당 대체수단을 <u>폐기</u>하여야 합니다.</p>	<p>관련법령, 이용약관, 인증업무준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4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15 조 (가입자의 의무)</b></p> <p>①~③ &lt;좌동&gt;</p> <p>④ 가입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하였거나 발급된 인증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, 즉시 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 은행이 해당 인증서를 <u>폐지</u>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, <u>하나은행</u> 앱에서 인증서 <u>폐지</u> 메뉴를 통해 인증서를 <u>폐지</u>해야 합니다.</p> <p>⑤ 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대여, 사용 위임,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의 도용이나 위조·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</p> <p>⑥ 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.</p> <p>⑦ 가입자는 대체수단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,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, 은행은 가입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해당 대체수단을 <u>폐지</u>하여야 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어통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어통일</p>

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6 조~제 17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18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</b></p> <p>① 은행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(이용기관)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'전자서명법 제 20 조(손해배상책임)'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 <p>② <u>은행은 가입자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로 인증서 폐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은행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9 조 ~ 제 20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21 조 (약관 외의 준용)</b></p> 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'전자서명법' 및 '정보통신망법', <u>'인증업무준칙'</u>, '전자금융거래법',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, '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', '개인정보보호법' 등을 준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&gt;</p> <p>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6 조~제 17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18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</b></p> <p>은행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(이용기관)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9 조 ~ 제 20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21 조 (약관 외의 준용)</b></p> 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'전자서명법' 및 '정보통신망법', <u>&lt;삭제&gt;</u> '전자금융거래법',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, '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', '개인정보보호법' 등을 준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&gt;</p> <p>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정위원회 권고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약관 외의 준용 사항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5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9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5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9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4 년 2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신설</p>